

##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차) 환수 관련 공시송달 공고

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차) 환수 대상자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,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1. 6. 28.

###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남부지청장



1. 건명: 긴급고용안정지원금(1차)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통지
2. 근거: 행정절차법 제14조·제21조·제22조,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(2020.5.18.)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환수금액	주소	내용	송달불능사유
박상*	1968.7.12.	1,500,000원	대구광역시 남구 영선시장1길 6-2(대명동)	긴급생계자금, 가족돌봄비용,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 미차감에 의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과오지급 관련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통지	폐문부재
임하*	1971.9.29.	1,500,000원	경북 포항시 북구 장흥로36번길 8-16, 301호		
이병*	1974.3.1.	1,500,000원	인천 남동구 은봉로166번길 27, 211동 1403호		
곽연*	1984.1.20.	500,000원	충남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737, 104동 1901호		
정혜*	1994.11.30.	500,000원	부산 북구 금곡대로105번길 12-10		
박화*	1999.11.23.	500,000원	서울 성북구 종암로25길30, 110동 303호		

4. 공고기간: 2021. 6. 28. ~ 2021. 7. 12.(15일간)

5. 기타 사항은 서울남부고용복지+센터 최윤수(☎ 02-2639-2456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